

의안 번호	2426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h1 style="text-align: center;">검 토 보 고 서</h1>
----------	------	--

###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25. 5. 30.(금)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30.(금)
-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6. 12.(목)

### 2. 제안이유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20조, 별표 1 신설)
  - 현행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거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바,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 보상금 신청 요건과 지급 기준을 정해 명시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안 제6조, 제9조~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제24조, 제26조~제27조)
  - 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용어 등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별표 1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별표 1 ~ 별표 6을 별표 2 ~ 별표 7로 변경함.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 5. 검토의견

- 현행 조례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개정 조례안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광고물별 보상단가, 보상금 신청 요건, 보상 제외대상, 보상금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금 수거 제도 운영 및 일부 조항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4. 지역개발과 자연 환경보전 및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마.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 ·지도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계획 수립·통보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 ·조정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와 지도·단속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